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59호로 공포] 됨에 따라 겨울철 설해대책업무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3.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안 제3조)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안 제4조)

- 소유자 건축물내에 거주시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

- 소유자 건축물내에 미거주시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

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안 제5조)

- 보도 :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라.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안 제6조)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함.

단,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

마.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안 제7조)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함.
-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등을 뿌려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함.

바.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8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관리해야 함.

4. 검토의견

본 조례 제정안은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나 교통두절 등 주민의 불편과 안전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문화를 정착시키고
- 주민들에게 재난, 재해 없는 삶의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안전성과 실효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한다고 판단됨.
- 또한 광주시 남구를 비롯하여 부산시 중구 등 4개구에서는 기히 본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거나 공포중에 있으며, 영도구 등 10개구에서는 의회상정 또는 입법예고 중에 있고
- 반면 서울시와 부산진구청 등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안전 사고 책임공방과 조례안에 별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사유로 부결된바 있음

- 그러나 선진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건물주의 자기 집 앞 눈치우기 의무조항이 상례화 되어 주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조례상 벌칙규정이나 안전사고 책임공방에 따른 대응방안 등 공·사익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타시·도나 타구의 사례등을 참고하여 보완함으로써 한치의 오차나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해당 부서장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 특히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등 관련법령에 건물주의 자기 집 앞의 눈치우기 의무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건물주의 사회적 책임 등이 확대 되어 가는 추세임을 감안 한다면

- 위 조례 제정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